

『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관광진흥정책 수립과 관광자원 개발, 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, 위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~제7조)
- 회의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~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구미시 관광산업의 대·내외적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,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구미시 관광진흥정책 수립과 자원개발의 활성화,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촉진 등 관광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통해 다양하게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, 현장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여 민·관 협력을 활성화하고 정책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자문협의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